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6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6. 15

다. 상정일자 : 2005. 7. 4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나. 제안사유

- 토지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구 지가공시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군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변경 등 조례를 개정하고
- 토지(주택)가격공시에 따른 주택관련 전문가의 신규 위촉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명칭변경

-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

○ 위원회 재구성

- 감정평가 및 주택관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위원회 재구성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태)

- 본 개정 조례안은 토지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의 명칭변경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 의결”

7. 붙임 :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화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내지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지가공시감정평가 및 주택관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중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업무담당계장"을 "업무담당"으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위원회의 구성)</u>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중 3인이상 7인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③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위원회의 위원은 지가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화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위원회의구성)</u>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p> <p>③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위원회의 위원은 지가공시감정평가 및 주택관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p><u>제3조(심의사항)</u> ①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p><u>제3조(심의사항)</u>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20조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